<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u> 동안 그 <u>내용을 검토</u>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BNI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00739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2020.06.17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24.05.22

info@bnikorea.com www.bnikorea.com

[BNI]

정 보 공 개 서

[(주)BNI코리아]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 20 . . [(주)BNI코리아]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 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 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 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 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 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성동구 뚝섬로1길25, 301호(성수동1가)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02)6261-8838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02)6261-8838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 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한니다. 이해가 가지 않 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 가에게 자문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 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 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http://ftc.go.kr/data/hwp/20080306 103723.hwp) (http://www.ftc.go.kr/laws/laws/laws.jsp?lawDivCd=08)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함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BNI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1길25, 3층301호(성수동1가)							
(주)BNI	법인 설립등기	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회	번호	대표팩스번호			
코리아	2008.05.07		2008.05.06	윤형석	(02)6261	.8838	-			
	법인등록번호	1	10111-3892232	사업자등	등록번호	22	0-87-68060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서울시 성동-	구 뚝섬로1길25, 3층3	301호(성수동1가)					
사내이사	윤형석	BNI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윤형석	(02)6261.8838	-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서울시 성동	구 뚝섬로1길25, 3층3	301호(성수동1가)					
감사	감사 윤지영 BNI	BNI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2111	윤형석	(02)6261.8838	-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 영화 기업)을 인수ㆍ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 · 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BNI)라 합니다)의 내용

11911	וואר ב-ב אין בין אין אין אין אין אין אין אין אין אין א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BNI									
상 호	가맹점 OO									
서비스표	BNI	등록번호 : 41-0194738-0000 등록일자 : 2010.03.05								
	BNI	등록번호 : 1330695 등록일자 : 2018.02.01								

- 1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2021	1,052,998	725,745	327,253	739,286	39,718	22,238
2022	1,784,818	1,130,674	654,143	1,181,968	295,087	326,890
2023	2,171,157	1,041,587	1,129,569	1,845,721	560,024	495,425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기 1)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D D 97	VI =	<u>-</u> 7π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윤형석	대표	2017.05.12~ 현재	대표	가맹사업업무종괄				
관련임원	윤지영	감사	2020.02.07~현재	감사	업무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수(명) 시점 상근 비상근 직원수(명)										
2023년 12월 31일 2 - 5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일자	등록번호	등록인	존속기간 만료일						
BNI	서비스표	2010.03.05	4101947380000	비엔아이 글로벌, 엘엘씨	2020.03.05						
BNI	서비스표	2018.02.01	1330695	비엔아이 글로벌, 엘엘씨	2026.09.15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 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위 상표권에 대한 사용권을 소유자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п. 가맹본부의 [BNI] 가맹사업 현황

1. [BNI]를 시작한 날 : 2020년10월20일부터부터 가맹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08년 06월 30일부터 직영점을 운영하였습니다.)

2. [BNI]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BNI 코리아	BNI	윤형석	2020년10월~현재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1길25, 301 호(성수동1가)

3. [BNI] 업종

영업표지	업종				
BNI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DIVI	기타서비스	비즈니스네트워킹 플랫폼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BNI]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TI 00	-	2021.12.3	:1	;	2022.12.3	81	2023.12.31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6	5	1	8	7	1	8	7	1
서울	4	3	1	4	3	1	4	3	1
부산	-	-	-	-	-	-	0	0	0
대구	-	-	-	2	2	-	2	2	0
인천	1	-	1	-	-	-	0	0	0
광주		-	-	-	-	-	0	0	0
대전	1	-	1	-	-	-	0	0	0
울산	-	-	-	-	-	-	0	0	0
세종	-	-	-	-	-	-	0	0	0
경기	1	1	0	2	2	0	2	2	0
강원	-	-	-	-	-	-	0	0	0
충북	-	-	-	-	-	-	0	0	0
충남	-	-	-	-	-	-	0	0	0
전북	-	-	-	-	-	-	0	0	0
전남	-	-	-	-	-	-	0	0	0
경북	-	-	-	-	-	-	0	0	0
경남	-	-	-	-	-	-	0	0	0
제주	-	-	-	-	-	-	0	0	0

5. 최근 3년간 [BNI]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	3	0	0	0	5
2022	5	2	0	0	0	7
2023	7	0	0	0	0	7

6. [BNI]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 정기준 (단위, 천원)

성기순								(단위, 천원)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매출액							산출 가맹점
지역	지역 가맹점 수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ት
전체	7	247,400	0	531,800	0	35,500	0	
서울	3	-	-	-	-	-	-	5곳미만
부산	-	-	-	-	-	-	-	-
대구	2	-	-	-	-	-	-	5곳미만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2	-	-	-	-	-	-	5곳미만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당사는 컨설팅/마케팅 등의 지식재산을 제공하는 형태의 가맹사업으로 전용면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기 표 내용 중 6개월 미만 운영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은 산정에서 제외되었으며, 6개월 이상 1년 미만 운영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은 연환산하여 연간 평균매출액에 산정되었습니다.

8. [BNI]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7	862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BNI]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2023년]손익계산서 기준 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 포함)로 [150,598]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논현동기업금융센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68	02-3452-7900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신한은행에 가맹계약 체결 후 1일내에 예치신청 하여 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신한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계좌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자세한 예치방법은 신한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문의 전화(02-3452-7900)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된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 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BNI**]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BNI코리아(주)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BNI코리아(주)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A클래스지역 B클래스지역 C클래스지역	74,250 61,050 54450				
가맹비 (가입비)	A클래스지역 B클래스지역 C클래스지역	72,600 59,400 52,800	계약체결일 다음날까지	가맹사업법 제10조상사유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가맹계약서 3.1.1
교육비	1,6	50	계약체결일 다음날까지	교육시작1일 이전에계약 해지	교육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가맹계약서 3.3

- ※ ① 신규 가맹 사업자의 소유주와 개인(직원 또는 독립적인 도급업자) 1명당 금일백육십오만원과
 - ② 디렉터 교육에 참가하는 이그제큐티브 디렉터 1명당 22만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가맹계약서 3.3.2)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없음			
계약이행보증금	없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A클래스지역	74,250			
합계	B클래스지역	61,050			
	C클래스지역	54450			
	A클래스지역	72,600			
가입비	B클래스지역	59,400			
	C클래스지역	52,800			
교육비	1,650				
보증금	O.	le le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2,200	220			약 33m² (실평수 약10평)
인테리어	자율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초도물품	가맹본부/ BNI코리아(주)	2,200	220	물품 공급 1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비즈니스네트워킹 도구 등(계약서3.2)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주체 : 가맹점사업자 협의 : 당사 점포개발팀	가맹점희망자가 원하는 위치를 선정 및 가맹본부에 통지→가맹본부의 승인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만20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	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	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 분담금	-	해당없음	-	-	-	-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주)BNI 코리아	실비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 미실행	교육실시 후	교육 필요시 지급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주)BNI 코리아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3일전	공사 전 계약취소	취소기한 경과	W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 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참고
지연이자	가맹본부/ 주)BNI 코리아	미납금의 매달1.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가맹계약서 3.8
소프트웨어 요금 및 테크놀러지 R&D 펀드		멤버1인당 1년 에 24미국달러 (수수료 별도)	신규 또는 갱 신 멤 버 등록후 익 월10일까지	없음	없음	가맹계약서 3.4 (수수료 및 부가세 별도)
프랜차이즈 유지수수료 (정기 로열티)	가맹본부/ (주)BNI 코리아	매출액x 20%	익월10일			가맹계약서 3.5 (부가세 별도)
연구개발기여금	가맹본부/ (주)BNI 코리아	멤버1인의 신규가입 및 갱신 당 24달러 (부가세별도)	익월10일			(BNI글로벌본사의) 연구개발에 관한 기여를 위함 (가맹계약서 3.4)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바로 전 사업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 ※ 당사는 차액가맹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지급하여야 하는 갱신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부가세 별도)	비고
갱신가맹비 (계약갱신의 대가)	초기 가맹사업 수수료의 25%	가맹계약서 2.2.5

- ※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 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상 권리 및 의무사항을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예상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조치합니다.

가맹사업의 승계에 따른 계약조건이 가맹본부와의 계약조건과 동일하지 못한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가맹금의 반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계약기간 내에 반환할 가맹금의 비소멸성 가맹금에 한하며 그 범위는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	13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 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 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 점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주)BNI코리아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가맹계약서 14.3.3.7 및 14.3.3.8)

귀하가 운영하는 [BNI]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BNI코리아]에 500,000원(부가세별도)의 환불 불가한 신청비(행정실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 야 합니다. 또한, 양도 및 재판매가 실행될 경우, 가맹사업자는 판매 가격의 10퍼센트(%) 금액의 양도 또는 재판매 수수료(시장 가치를 사용한 비현금 대가 포함)나 갱신 수수료 중에서 더 적은 금액("양도 수수료/재판매 수수료")을 (주)BNI코리아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사항

-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 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 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영업표지 등을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비용으로 즉시 철거하거나제거하여야 하고, 가맹사업거래의 종료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BNI**]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	·가격	구분
E C	6 ¬(LT)	상한 동일	하한	1 =
-	-	-	-	-

- ※ 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BNI]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당사는 [BNI]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비즈니스네트워킹 플랫폼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플랫폼사용료(멤버쉽비용)	1년 88만원	본사공문발송	법정한도 내

- 4. 가맹점화업차를 명업자들의관광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건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 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822 80 811	가맹본부	계열회사
비즈니스네트워킹 플랫폼	BNI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과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	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행정구역	구(區) 또는 군마다 1개의 가맹점 (인구와 등록된 사업자수를 고려)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을 우선으로 함. 표시(가맹계약서1.1)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동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규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 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 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팀 검토→영업지역 변경(안) 작성→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가맹점사업자 동의→영업 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 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 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 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BNI]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BNI**]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국내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54.98%	45.02%	0%	0%

2)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 당사는 컨설팅/마케팅 등의 지식재산을 제공하는 형태의 가맹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BNI]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 약갱신일로 부터 [5]년입니다.(가맹계약서 2.1)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 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 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 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③ 가맹점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필요하고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마스터의 중요한 비즈니스 정책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1.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4.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5. 기타 가맹사업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가맹계약서 2.2.1	

4) 계약해지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	다.
계약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5.2.1 지급 불이행. 가맹사업자가 마스터나 마스터의 계열사 또는 마스터가 승인하였거나 지정한 공급 업체에게 빚진 돈을 제때 맞는 금액으로 지불하지 않을 경우. 15.2.2. 기업로고나 브랜드 로고를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지 않거나 변경하는 경우와 당사의 상호, 당사가 사용할 것을 공지한 상호, 당사가 사용하였던 상호를 당사의 동 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	가맹계약서 15.2

15.2.3. 당사가 당사와 을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기업 로고 및 브랜드 로고를 변경·폐지하였을 때, 기존의 기업 로고 및 브랜드 로고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15.2.4. 위생적이고 청결한 점포를 위해 인테리어·설비의 내구연한 만료시점에, 객관적 근거에 의한 필요성 판단 시 이전 또는 이후 점포의 노후 시설 및 설비교체 보수의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15.2.5.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동의 없이 월간 3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한 경우

15.2.6. 매뉴얼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당사 수퍼바이저의 가맹점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5.2.7. 브랜드의 통일성과 제품의 품질을 보호할 수 있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가 맹점 위생과 제품 품질의 표준 기준을 엄격히 준수할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

15.2.8. 가맹사업과 관련된 영업 비밀을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당사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와 고객정보를 고객과의 계약내용 또는 법령의 허 용범위 이외로 사용하거나,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15.2.9.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매뉴얼에 따라 시공을 하지 않거나, 감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5.2.10. 가맹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동종영업을 행하는 경우

15.2.11.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판촉활동에 동참을 거부하거나 당사와 합의한 판촉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5.2.12.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해진 공통제품 외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원재료를 전용하는 경우

15.2.13. 고객의 컴플레인 발생시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와 협의 없이 판매가격을 정하여 고객에게 반복적인 컴플레인이 제기되는 경우

15.2.14. 재계약 시점에서 로열티를 본사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15.2.15. 교육 완수의 실패.

가맹 사업자가 본 계약의 8번 항목에 규정된 대로 교육 관련 필수 사항을 따르지 못 할 경우

15.2.16. 총수익의 과소신고. 감사를 통하여 가맹 사업자가 로열티 또는 광고 지급료, 또는 가맹 사업자의 지역 내 광고 지출을 2% 넘게 과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본 계약의 11번 조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가맹 사업자가 12개월 내에 2회 이상 적시 에 보고서 및/또는 납입금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15.2.17. 수표 배서. 마스터에게 지불해야 하지만 제 3자에 의해 가맹사업자에게로 잘 못 송금된 납입금을 가맹사업자가 즉시 배서하여 마스터에게 전달하지 않을 경우.

15.2.18. 적절한 재고율을 유지하지 않음. 가맹 사업자가 소비자의 요구를 적절히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재고율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15.2.19. 사업의 개시 실패. 가맹 사업자가 규정된 시간 이내로 가맹 사업자의 프랜차 이즈 사업 운영을 개시하지 못할 경우.

15.2.20. 서비스의 중단. 가맹사업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운영에 규정된 운영시간이나 일수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15.2.21.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을 직접 감독하거나 적절한 훈련을 받은 직원을 고용하지 못함. BNI 한국 본사의 단독 재량으로, 가맹 사업자가 직접 프랜차이즈 사업의 일 상적인 운영을 감독하지 못하거나, BNI 한국 본사가 때때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훈련이 된 직원들을 충분히 고용하지 못할 경우.

15.2.22. 기준. 본 계약 및/또는 운영 매뉴얼에서 합당하게 요구하는 정도의 기준을 운영 및 광고, 그리고 기타 면에서 가맹 사업자가 유지하지 못할 경우.

15.2.23. 기타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실. 범죄는 아닐지라도, 가맹 사업자가 시스템, 등록 상표 또는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나 제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식으로 처신할 경우.

15.2.24. 라이선스 및 허가. 가맹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에 필요한 라이선스, 인증 또는 허가를 얻지 못하거나 유지하지 못할 경우.

15.2.25. 기타 계약의 위반. 가맹 사업자나 가맹 사업자의 본인, 주주 또는 회원/관리자(해당되는 경우)가 BNI 한국 본사나 BNI 한국 본사의 계열사와의 기타 계약을 실질 적으로위반하거나 그러한 계약을 실질적으로 위반할 것을 위협하거나, 해결을 위해 하락된 기간 내에 그러한 위반 사항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15.2.26. 무단 양도. 가맹 사업자가 본 계약의 14번 조항을 위반하여 가맹 사업자 또 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지분을 판매, 양도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152.27. 사기 및 허위 진술. 가맹 사업자나 가맹 사업자의 본인이 가맹 사업자의 프랜 차이즈 사업 운영에 있어 사기를 치거나, 허위 진술을 하였거나, 가맹 사업자나 가맹 사업자의 본인이 가맹 사업자의 프랜차이즈 사업 신청에 관련하여 허위 진술이나 누 락(재무 관련 허위 진술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하는 경우.

15.2.28. 유치권. 가맹 사업자나 가맹 사업자의 본인 또는 이들이 소유한 자산에 대해서 압류 또는 강제집행의 부담금이나 영장 또는 그 외의 유치권이 발생하였고, 30일 내에 석방 또는 보석으로 풀려나지 않을 경우.

15.2.29.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으로부터 승인 및 허가되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가맹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으로부터 승인 및 허가되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15.2.30. 승인받지 않은 구매. 가맹 사업자가 현재 승인받지 못한 자격의 제공 업체로 부터 물품, 표지판, 서비스, 장비 또는 재고품을 주문하거나 구매할 경우.

15.2.31. 독점 소프트웨어. 가맹 사업자가 BNI 한국 본사의 독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있을 경우)을 오용하거나 무단 사용하는 경우.

15.2.32. 가맹 사업자가 보험을 유지하지 않거나 BNI 한국 본사가 지불한 보험금을 갚지 않거나 본 계약서의 관련조항의 요구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15.2.33. 핵심 인물, 핵심 인물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홍보와 운영에 합리적으로 충분한 시간, 주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중단하여, 이를 대체할 적당한 사람을 서면 통지 후30일 이내에 찾지 못할 경우.

15.2.34. 위반의 반복. 마스터가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가맹사업자에게 관련 항목에 따라 해결의 목적으로 서면 통지를 2회 이상 보낸 경우

15.2.35.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 재산을 사용. 가맹 사업자가 직원의 세금, 보험 및 혜택을 포함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프랜차이즈 사업의 자산이나 재산을 사용할 경우.

[6개월 내 해결 통지를 받는 경우]

가맹사업자가 본 계약서, 운영 매뉴얼, "개발 일정" 또는 가맹 사업자와 BNI 한국 본사 또는 BNI 한국 본사의 협력사 간에 체결한 부수적인 계약에서 1개 이상의 조건을 수행 또는 준수하지 않을 경우, BNI 한국 본사는 6개월간의 해결 기간을 제공한 뒤본 계약을 종료할 권리를 가진다.

가맹계약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아래 각호의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는 BNI가 가맹점사업자의 등록된 주소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받은 것을 확인한 적이 있는 가장 최근의 이메일 또는 SNS로 해지통지를보낸 즉시 발효된니다

-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5.1.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15.1.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15.1.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계약서 15.1
	15.1.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	

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15.1.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 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 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5.1.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 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 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15.1.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15.1.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15.1.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마 다음이 경우에는 [귀하이 동이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한 수 있습니다

기다, 기타기 이번에는 [미에기 이기된	E *I] AIT TEE TOE T METT.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요) → 승인 여부 통 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5일 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500,000원의 환불 불가한 행정실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가맹계약서 14.3.3.7)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 점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필요될 경우에는 비용 필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 귀하 또는 소유주의 사망이나 영구장애 경우에, 그러한 사람의 집행인, 관리인, 보전인 또는 다른 개인적 대표 (이하 "집행인")는 본 계약서 및 프랜차이즈 내의 그의 권리를 상속인 또는 집행인에게 사망이나 장애 발생일로부터 90일을 넘지 않는 합리적 기간 내에 매도 또는 양도할 수 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개시 후 90일내 가맹본부에 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가맹계약 14.2.1]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	-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BNI]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L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비즈니스네트워킹 플랫폼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당사 담당팀 건통(시작조사 포함 30일 가량 Q)→참가여분통지→와로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BNI]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자율	자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영업장관리·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9. 광고 및 판촉 활동

1)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분담 기준

당사는 [BNI]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부당 전차		부담비율 분담 절차		부담비율		부담	비고
1 =	07 07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正다 교사	-1				
광고	브랜드홍보+상 품 광고+ 가맹점모집광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전체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개별 행사 가맹점사업주 부담		t		월별 판촉 행사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부을 부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 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 가맹계약위반으로 가맹본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NON BEE BAC HAN EUTH.		(ピカ)	한편, 무기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8,9,10페이지잠고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8,9,10페이지참고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0,3,10페이지금포		
교육 실시	- 섬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섬포 개설	- 가맹섬 개설 및 영업시삭	D-day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점포환경개선 사유	○점포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 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처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o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 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촉진, 고객관리, 교육 훈련, 회계 등 가맹점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 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 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 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 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부담	문의: 가맹팀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 촉진, 고객관리, 교육 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 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영급에 포 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 을 초과한 부	문의: 가맹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BNI]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27 -

Ⅷ.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전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BNI]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2일	1,650	
보수 교육	미정	실비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 25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2.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년)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사업자등록
15년 5개월	증
15년 5개월	개업연월일
	기준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지 아니하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3.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천원)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418,000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1,410,000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운영 형태는 마케팅 및 컨설팅 등 지식재산권을 제공하는 형태로, 상기 직영점 운영현황은 당사의 사업자등록증 상 정보가 기재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고객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무재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30 -

- 32 -

- 34 -

- 36 -